# 첨부3 2023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재)사업 수행관리 사항

# 1. 사업계획 변경

- o 대·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 ※ 기술보증서 특약에 명시된 연구개발용 기자재 변경의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사전 협의
  - ※ 사업자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사업계획변경 통보 및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기한
	공통 제출서류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승인 사항	1. 과제의 목표 변경	- 변경신청 공문 - 수정사업계획서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동의서	과제 종료 1개월 전 까지
	2. 과제의 기간 변경		
통보 사항	1. 사업자 변경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동의서	- 변경 시점
	2.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변경 시점
	3. 대출실행기한 연장	- 대출실행기한 연장신청서 - 보증기관의 보증서, 취급은행 확인서 등	- 대출실행기한 3일전까지
	4. 취급은행 변경	- 취급은행 변경신고서	- 변경 시점
	5.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 변경 내용(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보증기관, 취급은행에 각각 신고)	- 변경 시점
	6. 사업계획서의 수정	- 사업계획서 변경	- 변경 시점
	7.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청금액과 선정통보서의 융자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	- 변경사업계획서	- 선정통보서 수취 시점

# 2. 중간진도점검

o 목적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으로 사업 성공률 제고

#### o 추진절차



#### o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대비 진도율 확인
- 대출금 집행 확인 : 목적 외 사용 여부, 타R&D사업 집행여부 비교 등
- 사업계획 변경사항 확인 등
- o 애로사항 확인
- 기업의 기술 및 기술사업화, 경영 애로사항 파악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연계하여 애로해소

## 3.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 o 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개발견본품, 시험성적서, Catalog 등 개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사진 또는 물품 첨부
  -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제과제로 간주하며, 대출 자금 일시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의 후속조치

#### o 결과평가

-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의 참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과제의 경우, 관리지침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P파다서드	•계획대비 목표 달성정도	20
목표달성도	•기술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	10
(40)	•연구개발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10
개발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 수준	20
(30)	•기술적 파급효과	10
사이치 기도서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20
상용화 가능성 (2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5
(30)	•경제적 파급효과	5
합 계		

## ο 과제종료 후 대출금 잔액 발생 시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상환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 4. 성과조사・분석

o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지원기업은 본 사업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과제기간 종료 후 5개년 간 성과조사에 응하여야 함

## 5. 자금지원의 취소

- o 자금을 지정된 용도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o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o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과제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 o 사업수행관리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
- o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자금지원 취소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에서 융자사업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음

# 6. 기타 사항

o 본 사업은 융자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제도가 없음**